

#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을 위한 제안: 사상과 이념에서 공약과 정책으로\*

박 의 경 | 전남대학교

여성관련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키워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정책은 매우 선진적으로,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유독 여성정책만이 과거 회귀적인 것은 이 명박 정권의 태생적 보수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최근 부르짖는 공정, 공생의 열린 미래는 여성정책의 전향적 변화와 이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완성도, 자유와 평등의 문제도 여성에서 교착되어 있기에, 완성도 높은 여성관련 정책은 정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의 품격을 한단계 높여주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정책을 포함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통한 여성정책의 제도화이다.

**주제어:** 여성정책, 성인지정책, 성별영향평가, 성주류화전략, 여성관련공약

## I. 서: 여성정책의 필요성

헤겔이 자유의 확대를 역사의 발전으로 규정하고, 그 정신사의 근원을 추적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이후 사회는 보편성의 확보를 모든 정책이 추구해야할 근본 목표로 설정하여 왔다. 모든 이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대다수 국가의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은 현대사회에서 각 국가의 정권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형평성의 확보와 보편성의 진작을 그 성공의 지표로 간주한다. 소수자를 위한 정책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분명하다. 롤즈(Rawls)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미니맥스(minimax)이론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이 확보되는 한에서만 불균등 분배가 인정되는 새로운 분배원칙이 바

---

\*이 글은 2011년 호남정치학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2011년 12월 호남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하였다.

로 소수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이자 전략이다.

여성이 사회적 의미에서, 그리고 권력적 차원에서 소수자임이 분명할진대, 이러한 원칙이 여성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수적으로 가장 많은 소수자 여성으로의 보편성 확장을 위한 사회의 최소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정책의 적용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이 언제나 신장되지 않는 것은 역사의 지표에서 잘 드러난다. 여성의 권익은 정책 목표에 여성을 명시했을 때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 특히나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사회가 편향되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사회와 복지등 여러 분야에서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의 역사 60여 년 동안 수많은 선거와 공약이 있었고 이들 중 일부가 정책으로 실행되지만, 여성관련 공약과 정책의 역사는 20년을 넘지 않는다. 1970년 말부터 여성 이슈가 사회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야 사회는 여성을 독립적인 정치적 행위자이자 정책의 대상으로 비로소 다시 보게 된다. 이는 여성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는 근본 전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70년대부터 제기된 여성 이슈의 핵심에 존재하는 질문이 바로 “여성 시민”에 대한 문제이다. 제한헌법부터 남녀 차별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치사회의 현장에서 여성이 시민으로 취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많은 여성들이 담당하는 가사 영역이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것은 선거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실제 여성의 삶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가사 영역에서의 노동과 삶, 활동이 정치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것은 여성의 권리와 의무를 논할 때 많은 부분이 절사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치의 현장에서 선거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여성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온전한 시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여성주의의 캐치프레이즈가 힘을 얻게 된다. 근대 정치사상은 사적 개인을 공적 시민으로 전환시켜 놓았고, 따라서 근대 교육의 근본 목표는 시민의 양성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시민의 성장과 함께 자라났고, 발전해 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은 존재하고 있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대표적 사적 영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의 공적 시민으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분리현상이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스트의 주장은 이러한 분리 현상에 대한 전향적 사고를 가능케 하였다. 이제 민주주의의 주인인 개인의 삶에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인 한에서 개인의 삶 자체는 모두 정치현상이고, 개인에서 시민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배제되는 인간은 이론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정책은 보편성과 형평성 확보가 제1의 관건이 되었다. 여기에 소수자를 위한 정책, 특히 여성정책의 필요성이 들어서게 된다. 개념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시민이지만,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를 여성이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아직도 필요한 작업이 바로 여성정책이다. 여전히 사회는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존재하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15대 대선 이후부터 나타나는 여성관련 공약과 정부의 여성정책 수행노력과 함께 여권투표(feminist vote)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제안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007년은 여성정책에 있어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시기가 아니라, 기왕에 제정된 여성관련 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제 — 즉, 여성정책의 지속가능성 — 가 필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17대 대선 공약부터 선거 후 구성된 정부의 정책까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향후전망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sup>1)</sup> 실제로 이 글은 2007년에 작성된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에서 공약으로”(박의경 2007)의 후속작업이라 할 수 있다.<sup>2)</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참여정부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관련 공약과 정책을 살펴 보면서 여성정책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논한다. 이를 위해서 II장에서 우선적으로 선거 공약과 여

1)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2012년 2월까지로 아직 8개월여 남아 있어, 정책에 대한 정밀한 평가는 임기 이후 보다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기조는 집권 초기에 설정된 내용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1년 12월 집권 4년차에서의 평가도 가능하다고 본다.

2)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2007)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연구』에 게재된 글로서, 참여정부당시의 여성정책 기조는 대선 당시의 공약부터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참여정부에서 제시하고 실행하였던 정책기조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예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정책의 지속성이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이 글은 대선당시의 여성관련 공약부터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여성정책은 15대총선 정도부터 여성관련 공약이 대두되면서, 모든 선거에서 각 정당에 매우 중요하게 살피는 분야로서, 이는 여성을 독립적 유권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성정책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이미 사회에 제도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III장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출발한 17대 대선 공약과 구체화된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의 향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여성부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었기에, 여성정책은 힘겹게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 소수자 관련 정책은 정책의 성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성평등 헌법 제정을 통한 여성정책의 제도화 논의가 필요함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을 대선 공약부터 정책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궁극적인 이 글의 목적은 어느 한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넘어서 여성정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글은 현실분석과 함께 현실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적 비전과 여성정치에 대한 지속가능한 전략을 찾아보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담아내고자 한다.<sup>3)</sup>

## II. 선거공약과 여성정책

근대 이후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시민의 참여하에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사회에 정착하는 데, 선거는 매우 중요한 기제이자 제도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2011년 현재<sup>4)</sup>에도 우리는 다음해로 다가온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다. 민주주의가 보편제도로 정착하면서, 선거는 이제 시민의 일상이 되었다. 선거가 일상이 되면서, 선거라는 단일 행위가 향후 수년간(다음 선거까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커지면서, 선거에 있어서의 공약의 중요성이 더욱 점증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제기된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 과거와 같이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3) 따라서 이 글은 현실분석에 초점을 맞춘다면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계속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4) 이 글이 발표된 시점을 말한다.

같다. 선거의 일상화가 단발성 공약의 약효를 떨어뜨리고, 공약이 정책으로 이행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일상에 대한 가시적 변화를 목도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진실성 공방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은 선거시 공약의 진실성과 가능성에 주목하여 후보자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 현실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공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서도 역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의 지도층일 수 있으나, 지속시키는 것은 일반 시민이라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공약과 정책은 현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소수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수자와 기득권자들에게 편향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약과 정책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변화는 법과 제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는 또한 보편성과 타당성의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성관련 공약이나 정책이 남성 중심적 사회구도에서 중요하게 대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여성관련 공약이나 정책의 작성과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 공약과 정책이 실행가능성과 성공여부이다. 해당 공약이나 정책의 집행 결과 균형사회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성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성주류화 전략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성인지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 등이다.

## 1. 성인지 정책(gender sensitive policy)과 성주류화 전략

성인지 정책이란 여성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진일보한 개념이다. 즉, 성인지적 관점은 사회 속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양성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시각 및 정책의 초점을 오직 여성에 두고 있는 여성주의적 관점과 차이가 난다. 여성주의적 접근에서 여성정책은 여성의 전통적 성 역할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에서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사회의 전반적 변화라든가 여성의 권력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여성 억압적 상황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된다(김재인 외 2007, 82-83).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성인지적 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어느 성도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의미한다. 동일한 정책이 각 성에게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지가 정책의 척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성의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립적'이라는 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회에서 중립이란 결과적으로 차별을 재생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적 평등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차이가 인지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차별이 되지 않을 정책적 적용이 성인지 정책의 목표이자, 양성평등 정책의 궁극적 귀착점이기도 하다.

성인지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이 확보되어야 사회에서 시민 여성의 자유는 비로소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자유는 남성의 자유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자유라는 중립적 가치가 시민 남성과 시민 여성에게 달리 적용되어 왔던 불편한 진실은 현실사회에서 중립이란 남녀차별이라는 부정의의 오래된 원인일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성인지 정책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본질과 실존의 문제에서 실존으로 사상과 철학의 초점이 옮겨온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존과 동떨어진 본질에 매달려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나 원칙이 법과 제도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질의 존재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그 본질과 실존의 거리가 일정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본질로 인하여 실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은 중세를 거치면서 이미 우리는 익히 경험하여 왔다. 본질은 실존의 근거이고, 실존은 본질의 구현체이다. 분배적 평등이나 성인지 정책 등은 본질의 실존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공유하는 현실의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합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성인지적 접근의 일환이자, 구체화된 실천전략이 바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다. 1995년 북경 여성대회의 행동강령에 따르면, 성주류화는 성 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 실행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며, 성주류화의 근본 목적은 성평등의 달성에 있다. 1998년 유럽의회가 규정한 성주류화란 남녀평등의 관점을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시켜, 모든 수준에서 모든 정책과 모든 단계에 반영되도록 정책진행과정에서부터 조직, 개발, 평가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주류화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주류화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과정에 성관점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첫째,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 둘째, 모든 정책 분야 및 이를 다루는 기관의 성 관점이 통합되는 주류화, 셋째, 기존의 남성 중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부 및 주류 영역이 성인지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하

는 주류의 변화과정을 통해 달성된다(Cornell 1987: 김재인 외 2007, 83에서 재인용).

한마디로 성주류화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이며,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별(gender)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행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성주류화의 인식론적 도구가 바로 성인지적 관점인 것이다(차인순 2007, 84-85).

성주류화 전략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으로서, 이들의 구체적 실행을 통해서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고, 성평등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2000년 이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우리도 2004년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05년에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2009년에 성인지 예산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도입하여 법제화 작업이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 2.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nalysis)

성별영향평가는 성주류화 전략의 중요한 도구로서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제시되었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는 ‘여성의 발전’(Women in Development) 개념과 관점에서 성별과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여성과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시각으로 여성의 발전에 대한 접근방식을 변화시켰다. 즉, 여성발전은 여성의 특수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에서 발전 그 자체가 여성과 같이 가야 한다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분석(gender analysis)을 하는 것으로 모든 정책 속에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점검하는 과정이다. 즉,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정책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다(김재인 외 2007, 107).

정책적 차원에서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 분석은 지속되어 왔지만, 성별(gender) 관점이



정책 평가와 분석의 준거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급격히 확대되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개념도 또한 잔존하고 있어 성별에 대한 고려가 정책 평가의 변수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소비영역뿐만 아니라, 생산영역등 사회 전 부문에 진출하게 되면서, 사회의 전반적 정책 평가시에 성별 변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정책결정직의 여성비율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낮아, 정책결정시에 성별에 대한 고려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의 구체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 차별적 사회에서의 정책 개발과 집행이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의 출발점이고, 정책에 내재해있는 성차와 성불평등성을 드러내서 인식하게 하여 성평등적 정책개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의 귀착점이다.

### 3. 성인지 예산

성주류화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바로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이다. 성인지 예산도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을 위해 사회가 실천해야할 제도로 보았다. 즉, 궁극적 목표인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착안하여, 예산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행동강령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은 ... 여성의 힘의 증진을 위한 인력 및 재정지원을 유용하게 하는 정치적 공약을 필요로 한다. 이는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재정조달 뿐 아니라,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 결정에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차인순 2007, 122에 재인용. 북경 여성행동강령 VI, 재정적 조치 345절).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북경행동강령은 또한 공공부문 지출에서 여성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공공부문의 지출에 남녀의 동등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생산력이 강화하고 사회적 수요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인지적 예산은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의 균형발전을 가능케 한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성인지적 시각을 정책과 예산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투사하여, 정책의 실제적 효과가 진정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게 미치는지, 정책의 결과에 까지 성평등적 평가를 내려 사회의 불평등을 실효적으로 가능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론다 샤프(Rhonda Sharp 2003)는 성인지 예산의 3가지 핵심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예산과 정책이 젠더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둘째,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과 이것이 실제 예산의 형태로 드러나도록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셋째, 예산과 정책을 실제로 변화시킨다(차인순 2007, 128).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을 통해서 2002년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여성관련 자료제출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2006년 국가개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된 조항<sup>5)</sup>이 명시되고,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2009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이 정부 각부처에서 실시되었고, 2010년 예산안부터는 성인지 예산, 결산서 제출이 의무가 되었다(차인순 2007, 125).

17대 대선이 있었던 2007년에 이미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성별영향평가의 성분석이 중요한 방법으로 대두되면서 성주류화 전략이 여성부를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현실이다. 경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17대 대선은 여성관련 공약이나 차기 정부의 여성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한다. 제도의 기반은 형성되었으나, 정치적으로 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여성정책의 향배와 진로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 17대 대선에서의 여성관련 공약과 여성정책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국가개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17)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개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 III. 17대 대선에서의 여성관련 공약과 여성정책과제

#### 1. 여성관련 공약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선거 공약이고 거기에 나타난 여성관련 정책이다. 여성관련 공약이 선거에 등장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여성정책의 문제는 이제 후보자의 공약목록에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이후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적용될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 선거공약에 대한 검증은 시행하기도 하지만, 공약에서 정책으로 이행되는 사실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정책의 여성관련성에 있다. 여성관련 정책은 여성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야 한다.

여성관련 공약이 구체화되고, 명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나 17대 대선에서도 여성관련 공약은 각 정당의 공약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여성정책은 “무상보육 전면실시와 직장-가정의 조화를 통해 여성친화 사회건설”로 요약된다. 한나라당의 여성관련 정책공약은 “여성성공시대를 열기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and Baby 플랜’의 추진하겠습니다”로 되어 있다. 이는 양성평등사업내실화,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Mom and Baby 플랜 추진 등으로 구분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b, xiv).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2007년 11월 ‘여성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여성공약을 적시하고 있다. 행복한 여성, 행복한 가정,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3대분야에서 12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선성하고 제시하였다. 행복한 여성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행복한 가족은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로,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가 경영에의 여성의 주도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분야별로 4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한나라당 여성정책 공약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아래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 남녀가 함께 돌보는 사회,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 사랑하는 가족이 밀거름이 되는 사회, 여성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사회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각 항목당 2~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여성정책 공약에서는 특히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 항목에 4개의 정책영역을 목표로 설

〈표 1〉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3대분야	12대 정책과제
행복한 여성	1. 적정임금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2. 비정규직 축소, 성별임금차별 개선 등 차별없는 여성노동 3. 모든 여성평생학습 지원,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4. 폭력과 범죄불안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가정	1. 돌봄의 사회적 지원확대,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2. 영유아 무상보육, 교육실험 3. 타문화를 수용하는 사회, 다문화가 경쟁력인 사회 4. 여성빈곤, 노후불안이 없는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	1. 건강한 여성, 건강한 대한민국 2. 생활 속의 평등문화 정착 3. 모든 국가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 반영 4. 나라 경영에 주도적 참여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b, 연구보고서-16, 156.

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 나라경영에 주도적 참여를 3대 핵심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질 높은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비정규직 비율 축소, 영유아 무상보육, 교육, 모성권 강화등 임신, 출산, 육아의 국가책임 확대, 성평등적 국가정책 수립과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제시한 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에서는 ‘당당한 여성, 미래 한국의 희망’을 모토로 제시하면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5대 목표와 12대 영역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시대의 도래,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17대 대선 여성정책 공약의 5대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다수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공약의 우선순위를 일반주부, 서민층 여성, 저소득층 배려에 할당한다. 둘째, 체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일반 여성들이 일상과 삶에 밀착한 공약을 제시한다. 셋째, 확고한 여성적 관점의 공약으로 여성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자로 인식하고, 모든 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다. 넷째,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공약으로 실천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며, 10% 이상을 여성관련 공약에 할당한다. 다섯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공약으로 정책 조정과 협조의 효율성을 기

〈표 2〉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5대목표	12대 영역
1.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	1. 여성 다시 일하기 2. 2030 여성 일자리 갖기 3. 여성CEO 만들기 4. 가족 친화적 기업만들기
2. 남녀가 함께 돌보는 사회	5. 우리아이 함께 돌보기 6. 우리아이 안전하게 키우기
3.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	7. 폭력없는 안전한 세상 8. 건강한 여성, 국가의 책임
4. 사랑하는 가족이 밑거름이 되는 사회	9. 가사노동 인정하기 10. 평등한 가족 만들기 - 다양한 가족 인정하기
5. 여성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사회	11. 공직부터 양성평등: 533 프로젝트 12. 여성이 동참하는 평화통일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b. 연구보고서-16. 198.

하기 위해 기존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 2. 여성정책 과제

2007년 17대 대선직전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책자를 살펴보면 <따뜻한 사회>를 표방하면서 ‘그늘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양성평등/가족사랑 사회가 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한다. 여기에 1) 여성일자리 확대, 2) 양성평등의 실현, 3) 가족사랑, 가족돌봄노동의 분담이 여성관련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각 항목에서 세부적 내용을 언급하면 <표 3>과 같다.

여성일자리 확대는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여성친화적 유망직종 발굴과 여성의 직업훈련 기회확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지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학력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향상, 여성가구의 증가로 인한 여성 일자리 요구 증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대책 등이 구체적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양성평등의 실현에서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

〈표 3〉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정책과제

정책 과제	세부적 내용
여성일자리 확대	1.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대폭 창출 2. 여성친화적 유망직종을 발굴하고 여성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3.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4.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실현	5. 성인지 정책 추진의 기반 확립 6.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7. 부부간의 경제적 평등 실현
가족사랑/가족돌봄 노동의 분담	8. 가족사랑/성공가정 프로젝트 9. 가족 간호휴가제도의 도입 10. 노인 돌봄서비스의 확대

출처: 한나라당, 2007. 일류국가 대한민국 (북마크) pp.135-138

에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서 평등 고용 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성별 분리통계 작성 및 활용 등을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의 기반 확립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과정에서의 여성의 확대와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에 여성할당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공공부문 양성평등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공식화하고, 혼인 중 재산분할권과 이혼시 분할 청구권을 도입하여 부부공동재산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부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부부 간의 경제적 평등 실현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여성관련 공약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바로 가족관련 항목의 설정에 있다. 가족 사랑/가족돌봄 노동의 분담에서는 가족사랑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 확산 및 그에 따른 지원과 가족 형태, 세대간 성별갈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족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특히 가족에 의한 돌봄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남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참여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가족사랑/성공가정 프로젝트에서는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사회비용을 절감하며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내세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일/가족 양립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가족간호휴가제도를 도입하여 가족 구성원의 간호휴가제도를 마련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특히 여성노인에 부합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개발하

고, 노인을 위한 가족중심 간병서비스 및 노인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제시한다.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차기정부 여성/가족 정책 과제를 선정할 바 있다. 보고서에서 여성정책 과제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로 다음 네 가지를 적시한다. 첫째, 성차별적인 노동 환경과 양육의 부담으로 야기된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 및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 노동의 필요성. 둘째,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정규직화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셋째,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의 필요성. 넷째, 지구화-분권화-평화통일이라는 변환기에 필요한 성인지적 평등전략, 정책 수립 등이 그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c, iii).<sup>6)</sup>

## IV.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 1. 여성정책의 수립과 진행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1998~2002) 및 2차 (2003~2007) 기본 계획 기간 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어하여 실질적 성평등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 전략을 도입하여 국가운영과 사회전반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책임 분담이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여 왔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성평등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해나가고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수립되게 된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국정지표가 변화하면

6) 이러한 상황적 여건하에 선정된 여성가족 정책의 10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일자리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확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조성, 여성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 여성 지원강화, 여성과 남성이 모두 건강한 사회,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정책집행력 강화, 생활환경에서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사회, 결혼 이민 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조성, 한반도 평화 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한국을 움직일 여성의 힘 키우기(공공부문)(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c, iii).

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게 되는 등 1, 2차에 비하여 정책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 경제상황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정책과 함께, 정부조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역점 정책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부문이 강화되었으며,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의 현실을 드러내는 M자 커브를 완화(선진국화)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정책,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강화와 함께 성평등지표 작성 발표, 여성국제협력확대등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 정책이 추가되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정책과제를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상과 같이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은 정부조직 등 여성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추진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초와 정책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본계획 과제 분류 및 구조를 구성하였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정책추진강화등 3개 영역으로 축소 설정하면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과 함께 전업주부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협력하여 전국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정,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경제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특성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 가족 등 주변 정책을 정리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등은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성범죄자 인터넷열람제도 등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 2. 여성정책의 분석과 평가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경제에 역점을 두면서, 여성 자체에 대한 문제로부터는 거리를 유지하여 왔다.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와 연관된 사안을 주요 과제로 책정하고, 대처해 왔다. 이로 인해 정권 초기부터 여성의식, 여성주의적 시각 부재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권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 당시 초기에 여성부 폐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성계의 반발을 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거는 정부부처가 기능위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사고 속에서 모든 정부부처는 성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비현실적, 당위적 전제 위에 사회의 소수자 문제나 차별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기에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일반정책과 별도로 수립되어야 하고, 별



〈표 4〉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정책목표	핵심과제	정책과제
I. 여성인력 활용	1.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1. 청년여성층의 진로 및 경력개발지원 2.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구축
	2. 여성의 취업영역확대와 대표성 제고	1. 과학기술분야 등 여성전문인력 육성 2. 여성경제인 육성 3. 여성 농·어업인 지원 4.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3.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1. 고용상 차별 예방과 시정 2.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3.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제도대상 보호강화
	4. 여성일자리 확대	1. 성장동력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2. 기업 여성인력 수요활성화 3. 여성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4. 여성기업경영인프라 확충
	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4. 가족 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II. 여성의 권익 보호	1. 여성의 건강	1. 여성의 건강보호
	2. 대상별 여성복지 욕구충족	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보장 2. 한부모가족 지원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4. 미혼모 지원 5. 여성노인 지원 6.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를 위한 보호 마련
	3.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1.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2.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인향상
	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	1. 여성/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제도 개선 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
	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1.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 2.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 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4. 성매매 지역 및 시설단속

〈표 4〉 계속

정책목표	핵심과제	정책과제
II. 여성의 권익 보호	6.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1. 다문화여성 사회통합지원 2. 다문화여성 보호체계 구축
III.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1. 성인지 정책의 시행	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2.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3. 공무원 성인지교육 체계화
	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2. 시민사회와의 협력
	3. 평등문화 확산	1.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2. 양성평등 교육확대 3.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4. 여성국제협력 확대

출처: 여성가족부. 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판)

도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고,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된 근거이기도 하다. 여성부를 기능적으로 보아 가족과 복지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 영역으로만 성주류화를 주장해온 21세기 국제적 조류에도 역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기반 위에서 시장경제를 신뢰하여, 경쟁력과 실용을 내세우는 그야말로 현실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여성정책도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와 경쟁력 강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표 4> 참조)에서 잘 드러난다. 여성이라는 특수한 현실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경제라는 보다 큰 일반적 범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특수한 현실이 일반성 뒤에서 사상되는 현상은 역사에서 많이 감지되어 왔던 일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 논란에도 여성이나 소수자의 문제를 별도의 처, 청이나 부서를 두어 독립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여성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와 여성의 관계 설정에서 여성이 독립변수로 서지 못하고, 일반적 경제와 사회 논리의 종속변수로서 사회의 발전을 따라가게 된다. 물론 사회의 전반적 발전이 여성의 발전에 공헌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라는 해묵은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위헌판결이 난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한 논란 재점화가 대표적 사례이다.

성주류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 접근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성주류화에 대한 인식을 정권담당자들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 여성문제의 뿌리와 근거를 보지 못하고, 피상적 양상만 보고 대중요법만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정권도 거의 동일한 여성정책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 남녀 차별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취업률 등을 통해 살펴본 사회에서의 남녀 차별적 상황 지표가 나아졌음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sup>7)</sup>

사회에서 소수자의 문제는 정책적 유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상충효과를 내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사회의 궁극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경제지표는 중선진국으로 진행하고 여성 고용에 있어서 M자 곡선의 커브 곡면은 완화되고 있지 못하고, 삶의 질과 생활수준은 상위권에 있음에도 여성권한척도(GEM)는 중하위에 처져있는 현실의 괴리<sup>8)</sup>가 바로 우리의 상황을 대변한다. 즉, 한국의 여성문제는 성주류화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 접근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09년도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연차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 이후 1, 2명에 불과한 여성장차관 비율은 차치하고라도,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8년 6.1%에서 2009년 6.8%로,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7.6%에서 7.9%로 늘어나는데 그쳤다(여성가족부 2009, 10-11).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취업, 재취업에 역점이 맞추어졌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동반되어야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리라는 것이 자명하다면, 의식의 변화를 위한 작업 또

7) 현재 한국에서 여성의 상황에 대한 분석은 매우 역설적이다. 여고생의 대학 진학율은 83%로 OECD국가 최고 비율이다. 그러나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은 5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남성 급여 기준 여성의 급여는 61%로 이 또한 OECD 최하위에 위치한다. 5급 행정, 의무, 사법고시 여성 합격자는 각각 50%, 65%, 40%대에 이른다(한겨레21 제754호).

8)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반영하는 HDI(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국민소득, 국민의 평균수명, 국민의 교육수준 정도 등의 지표를 합산)에서 한국은 170여 개국 중 30위 이내인 상위국에 속하지만, GEM(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의 국민소득, 여성의 수명, 여성교육수준, 여성 상위직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의 지표를 합산)에서 한국은 70위권 이하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의 전반적 경제발전이나 지적 발전의 수준과 여성의 발전 수준의 격차를 드러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실제로 HDI 상위 10개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GEM에서도 10위권을 벗어나는 국가가 없다는 차원에서 양 지표 간의 격차는 사회의 불균형성을 보여주고, 여성 관련 정책이 특별히 요구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www.undp.org).

한 동반되어야 한다. 경제에 역점을 두어, 여성의 취업률이 일부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여성비율은 늘어만 가고 있다. 통계청이 2012년 5월 25일 발표한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비정규직은 9만8000명이나 늘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는 남성이 3.3% 늘어난 반면 여성은 14.4% 증가했다. 170만 시간제 노동자중 73%인 123만이 여성이었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4개월이었으며, 임금도 62만 1천원으로 기초생활비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매일노동뉴스 2012/5/30). 2007년 비정규직 법이 시행된 이후에 여성은 그 혜택에서 밀려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까지는 남성 비정규직 290만7000명, 여성비정규직 279만6000명으로 비슷한 규모였지만,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30만 명 이상 많아지고 있다(매일노동뉴스 2012/5/30).<sup>9)</sup>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은 여성을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절대적 고려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물론 이전 정권부터 법제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적 예산제도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제고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을 통합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여성관련 정책의 시작이고 최소한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성 중심적 사회가 균형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의 곳곳, 특히 정책결정직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시권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으로 성주류화를 위해서 정부는 고위직에의 여성비율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정부가 여성정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성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이 결국 가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여전히 여성은 가족과 연계되어 존재하는 종속적 존재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가족이 여성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안의 해결방법과 귀결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

9) 2011년 기준으로 남성 비정규직은 27.8%인데 비해, 여성 비정규직은 42.8%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실행이후 여성 비정규직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407).

이다. 앞서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나라당의 17대 대선에서의 여성정책은 가족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등장했다. 이러한 가족 관련 항목의 설정에서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여성관련 공약과 과제의 출발점과 도착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가족은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적 정책임에도 여성관련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 여성은 가족과 불가분의 존재로서, 현재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가족 내의 가사노동, 돌봄 노동을 기본으로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서, 한나라당의 여성관련 공약에 근거한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의 과제와 공약설정, 정책의 방향 및 한계까지 도출해 낼 수 있겠다.

여성정책의 초점이 가족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성주류화 전략이 제대로 수행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책결정직이나, 사회의 고위직에의 여성 진출에 대한 적극적 진출 촉진 정책과 배려가 들어서기도 쉽지 않다. 남성중심사회에서 경쟁력은 성중립적 개념이 아니다. 성주류화 전략의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차별적 사회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경쟁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중립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정책에 있어서 이를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은 바로 1년 후에 '실종'이라는 여성단체의 혹평을 받았다. 2009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그동안 여성부 신설, 성폭력특별법 제정 등 여성정책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사업’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기본 정책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인권 의식과 민관 협력 부재, 가족/보육 정책 후퇴,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의 키워드로 설정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여성일자리 창출도 “구호만 있을 뿐, 계획도 없고 성과도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한겨레신문 2009/2/25).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 여성고용정책 진단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방안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공공부문부터 이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이미지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성과 노동계 전반에 지배적이다. 이는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시켜 남녀성간 고용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여성 노동자를 더욱 주변화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정은 2010).<sup>10)</sup>

10) 윤정은(2010)의 글은 2010년 1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이명박 정부 여성고용정책 진단 및 대안

### 3. 여성정책의 전망과 비전

이명박 정부가 폐지하려다 기사화당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지만, 현재 여성가족부에 여성은 없고 가족만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속에서 여성은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존재할 뿐,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여성정책은 여성의 독립적 자아정체성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여성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임원 여성할당제 실시, 여성장차관 30% 임명 등을 내놓았지만 출범 초부터 여성부 존폐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러한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셈이다. 정권 초기 존폐의 위기 속에서 살아난 여성부는 우여곡절 끝에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지만, 여전히 정책 집행부처라기 보다는 정책 협력부처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이 경제난국 타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성평등 기본법 제정 등 지난 정부부터 지속되어 왔던 성평등 관련 정책은 실종되어 왔으며, 이미 제도화된 성별영향평가제도나 성인지예산제도도 내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정부 회의에서 여성의제는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주변화 되고 있는 것은 최근 발생했던 국회의원의 여성비하발언, 청와대 경호원 성추행 사건, 지방의원 집단 성매매 사건 등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회의원 제명은 부결되었고, 정부는 다른 성추행, 성매매 사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자리 잡아 왔던 성평등 정책 확산 기조도 흔들리고 있으며,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남성 중심적 사회의 구조를 중립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가족 이슈에 대해서도 가족 가치에만 집중할 뿐, 평등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통합적 정책 수립이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복지, 인권 의제는 경제난국 타개와 경제 살리기의 명분 아래로 숨어버린 셈이다.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으로 조정, 점검하는 성평등 담당기구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성평등 담당기관,

---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한 비판의 글이고, 20일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당시 여성부가 제시한 유연근무제도는 보육정책의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미디어/언론 2010/01/28).



여성복지 담당기관 등 독립적 여성관련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실질적인 여성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집행능력 강화와 성평등 조항의 제정, 공공보육정책 수립, 종합적 저출산 대책, 비정규직법의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결정직에서의 여성진출 확대정책의 지속적 추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교육 등 국가차원의 후속 조치와 체계적 관리가 수반되는 국가발전기본계획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사회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여성신문 2011/6/17, 7/22).

특히 성평등 조항의 제정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 미래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은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법과 규정이 많이 제정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성차별 금지만으로는 성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법과 제도의 신속한 제정과 적용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사회 주변에 존재하는 남녀차별적 의식은 여전히 강고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대한민국에서 법과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 16년 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만으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가 변화되어야 성평등이라는 목표도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성평등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 사이의 평등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평등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되며, 성차별적 법제와 관행을 없애고, 남성 우월적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며,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대표성을 확대하는 등, 이를 위한 사회 정책적 투자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박선영 2008).

현재 여성발전기본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여성에 대한 규정은 발전과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발전과 보호라는 말에는 결국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21세기의 미래비전으로서의 여성정책은 이러한 차별적 사고에 대한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박선영은 2008년의 보고서(한국여성정책연구원,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향>)에서 헌법에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은 그 사회의 가치관과 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현실생활에서 양성 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헌법과 같이 성평등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헌법조항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여성신문 2008/2/2)

이어서,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독립규정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이는 성평등이 헌법적 질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평등권 조항도 성평등을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성평등을 독립규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헌법에 담아내고, 성평등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라는 점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선영 2008).

독일이나 스위스, 유럽연합의 헌법<sup>11)</sup>은 모두 남성과 여성의 평등,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 헌법은 “평등원칙은 충분히 대표되지 못한 성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의 유지나 채택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필요성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제화가 빠른 시간에 달성되어, 사람들의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라고 명시하는 성평등조항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헌법 규정은 국가에게 양성의 평등 실현과 차별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여성관련 법제는 법의 준수 의지와 지속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성평등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다는 사실은 국가에 실행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법과 규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동시에 모든 국가의 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개

11) 독일과 스위스 헌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국가는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의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독일헌법 제1장 제3조 2항).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법률은 특히 가족, 교육 및 근로의 분야에서 양성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평등을 확보해야 한다”(스위스헌법 기본권 조항 제8조 3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a, 90).

유럽연합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남녀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의 원칙은 충분히 대표되고 있지 않은 성에 특정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유지 또는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유럽연합 헌법 제II-83조 (양성평등))(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a, 91).

정은 헌법예외의 성평등 기본권 조항 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가 정책의 보호나 배려 대상이 아니라, 인권 보장의 대상이 되어야 열린미래가 달성되고, 민주주의가 보다 더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 V. 결: 여성정책의 지속가능성

선진국에 비해 여성정책과 여성관련 법제의 시작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나라보다 빨리 자리 잡은 데는 지난 시민운동과 사회진보세력의 도움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노래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노래하듯이, 법과 제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2011년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제 기왕에 법제화된 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관건은 법과 제도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사이의 거리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실상은 양자간의 거리를 좁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어야 하지만 임기를 1년여 앞둔 현 시점까지도 이명박 정부는 기존 사회의 형태를 유지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성정책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는 일종의 교착상태이자 반동적 상태(back-lash)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이미 많이 갖추어져 있기에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은 법제와 이후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는 선도적 정책으로 방향설정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성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출발하였다. 여성을 독립적 자아정체성을 가진 인권적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게 되면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적용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들어서 여성주의적 시각은 여성관련 정책에서 거의 폐기되기에 이른다. 여성을 보호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주체적 사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여성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면서, 과거의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현재의 여성을 재단하려고 하는 정책적 우를 범하면서 여성관련 정책은 현재 여성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이후의 여성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관련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키워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정

책은 매우 선진적으로,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유독 여성정책만이 과거 회귀적인 것은 이명박 정권의 태생적 보수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최근 부르짖는 공정, 공생의 열린 미래는 여성정책의 전향적 변화와 이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완성도, 자유와 평등의 문제도 여성에서 교착되어 있기에, 완성도 높은 여성관련 정책은 정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게 될 것이다.

21세기 여성정책의 목표는 여성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있으며, 이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법제도와 의식의 간격을 줄여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이는 성평등 관련 조항을 헌법에 제정하여 여성을 향한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민의 의식 변화에도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며, 헌법을 통해 국가는 사회의식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시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것이며, 사회의 성평등 의식 제고와 여권투표의 가능성을 높여 사회의 지적, 도덕적 수준을 고양시킬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최종목표는 시민의식의 고양을 통한 열린 미래의 달성과 민주주의의 완성에 있다.

투고일: 2012년 4월 12일

심사일: 2012년 5월 18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일

## 참고문헌

- 김재인 외. 2007. 『성평등정책론』, 교육과학사.
- 매일노동뉴스. 2012. “여성비정규직 특성 감안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해야”(5월 30일).
- 미디어/연론. 2010. “이명박정부 여성고용정책 진단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1월 28일).
- 박선영. 2008. “성평등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평등을 보장할 수 없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8월 5일). [www.ildaro.com](http://www.ildaro.com)
- 박의경. 2007.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여성연구』 2호.
- 여성가족부. 2004. 『성인지전략기획연구: 해외성인지정책 우수사례자료집』.
- \_\_\_\_\_. 2007.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_\_\_\_\_. 2008. 『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_\_\_\_\_. 2009.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_\_\_\_\_. 2010a. 『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연구』.
- \_\_\_\_\_. 2010b. 『성평등보고서』.
- \_\_\_\_\_. 2010c.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 여성신문. 2008. “헌법에 ‘성평등’ 조항 신설을”(2월 2일).
- \_\_\_\_\_. 2011. “‘여성정책기본법’ vs ‘성평등기본법’”(3월 18일).
- \_\_\_\_\_. 2011. “정부 주도 성인지예산제도 성공하려면 국가발전기본계획에 넣어 ‘지속성’ 확보해야”(6월 17일).
- \_\_\_\_\_. 201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성공하려면 단체장의 ‘성별관점 인식’이 성공의 관건”(7월 22일).
- \_\_\_\_\_. 2011. 성인지 예산제 “갈 길이 멀다”(9월 2일).
- 윤정은. 2010. “여성부의 ‘퍼플잡,’ 무늬만 보라? “여성 노동 조건과 성차별 더 악화시킬 것” 우려 쏟아져.” 『여성주의 저널 일다』(1월 25일). www.ildaro.com.
- 차인순. 2007. 『성인지정책: 이슈와 제도』. 서울: 푸른사상.
- 한겨레신문. 2009. “이명박정부 1년 여성정책 실종”(9월 25일).
- 한계레21. 2009a. “골라서 잘란다. 30대 여성 비정규직.” 제754호(4월 2일).
- \_\_\_\_\_. 2009b. “헌법이며 국가의 의무를 담아라.” 제779호(9월 24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a. 연구보고서 13-1. 박선영 외.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 정비 연구(1) —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 \_\_\_\_\_. 2007b. 연구보고서 16. 김원홍 외. 『공직선거의 여성정책 공약평가 틀 개발에 관한 연구 — 대통령선거 및 총선을 중심으로』.
- \_\_\_\_\_. 2007c. 연구보고서(수시과제)-4. 변화순 외. 『차기정부 여성/가족정책 10대과제』.
- \_\_\_\_\_.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2. 민무숙 외. 『신정부의 여성정책: 비전과 전략 과제』.
- \_\_\_\_\_. 2011. 여성정책포럼. 김원홍 외. 『공공기관, 고위공무원 여성대표성 현황과 제고 방안』.
- \_\_\_\_\_. 2011. 연구보고서 32. 주재선 외. 『2011 한국의 성인지 통계』.
- 한나라당. 2007. 『일류국가 대한민국: 희망공동체』. 북마크.
- Cornnell, Raewyn. 1987. *A Gender and Power: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Cambridge: Policy Press.
- Sharp, Rhonda. 2003. *Budgeting for Equity*. UNIFEM.

ABSTRACT

---

## A Study on the Sustainable Policy on Women: From Theory and Ideology to Public Commitment and Policy

**Euikyung Park**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licy for women is a key word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Unlike other many policies which are future oriented, only the policy for women shows its tendency of the past oriented. It will be closely related to the conservative inclination of the Lee Myongbak administration. Fairness and cohabitation of the Lee administration is not possible without critical change and transition of the policy for women. Because the issue of Democracy, as well as the issues of freedom and equality, is now in deadlock at the issue of women, the high quality policies for women will upgrade our national dignity. For this, we need to institutionalize the policy on women through gender-mainstreaming strategy including gender impact analysis and gender sensitive policy.

**Keywords:** policy for women, gender-sensitive policy, gender impact analysis, gender-mainstreaming strategy, public commitment on women